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2026년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2. 19.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I

의료기관 세탁물 위탁처리 과업지시서

□ 개 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위탁처리함에 있어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규정된 세탁물을 전문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원내 세탁물로 인한 감염예방과, 청결한 세탁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함.

□ 위탁처리 현황

가.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 인천국제성모병원

나. 허가병상수 : 717병상

다. 일평균 외래 환자수 : 1,590명(공휴일 제외, 토요일 포함)

라. 일평균 입원 환자수 : 499명 (공휴일 제외, 토요일 포함)

마. 월평균 발생 세탁물량

침구류 - 29,692kg / 의류 - 21,245kg / 기타 - 22,533kg

□ 대상 품목

가. 본원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세탁물

1) 침구류 : 이불(일반, 중환자, 소아), 매트커버, 베개, 베갯잇 등

2) 환의류 : 일반환의(소아, 중환자), 산부인과/정형외과 환의, 내시경바지 등

3) 린넨류 : 수술포, 기계포, 모자, 타월, 기타 린넨류 등

4) 근무복 : 직원근무복, 덧가운, 수술가운 등

5) 기 타 : 커튼, 햄퍼, 특실 린넨류 등

나. 세탁물 중 감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오염세탁물

1)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오염된 세탁물

2) 환자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3) 기타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다. 기타 세탁물

1)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

세탁물 처리업자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작업장

- 1) 작업장의 위치는 통행이 많은 곳, 식당휴게실 등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이어야 한다.
- 2) 내벽은 내수성(耐水性) 자재로서 표면이 매끄럽고 밝은색 페인트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 3) 물을 사용하는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및 인조석 갈기로 마무리되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바닥은 타일·인조석 갈기 및 리놀륨 등의 재료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 4) 충분한 채광·조명·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5) 쥐나 해충이 서식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6) 오염 작업 구역은 다른 시설과 구획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7)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입구와 세탁된 세탁물의 출구는 각각 달리 시설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기준

- 1)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고압보일러: 세탁기에 열탕 및 수증기 공급이 가능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소독시설: 세탁하기 전 세탁물을 소독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오염작업구역에 설치해야 한다.
 - 세탁기: 섭씨 80도 이상 100도 이하의 열탕 및 수증기를 주입하여 세탁할 수 있어야 한다.
 - 탈수기: 원심분리 원리로 탈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세탁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구비할 필요가 없다.
 - 건조기: 섭씨 80도 이상 120도 이하의 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자동온도조절기가 붙어 있어야 한다).

- 다림시설: 수증기와 열풍으로 세탁물을 다림질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롤러기, 프레스기 등]
- 수선시설: 수선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2) 다음의 용기류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용기는 소독과 사용이 쉬운 구조로서 용기의 표면에 “세탁 전”, “세탁 중”, “세탁 완료”, “폐기물 용” 으로 표기해야 한다.
-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용기
- 세탁 중인 세탁물의 운반용기
- 세탁이 끝난 세탁물의 운반용기
- 내수성 자재로 된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
- 3) 작업장의 청결 유지, 해충 제거 및 쥐잡기를 위한 소독약품과 소독기구 및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구비해야 한다.

다.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로서 남녀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고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라. 탈의실

- 1) 작업장 외의 장소에 남녀로 구분된 탈의실을 갖추어야 한다.
- 2) 탈의실에는 충분한 수의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

마. 창고

세탁에 필요한 소독제·세제, 그 밖의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바. 운반차량

- 1) 차량의 적재고는 밀폐되어야 하고,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과 세척이 쉬운 구조여야 한다.
- 2) 차량 안에는 소독약품, 기구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세탁 방법

- 가. 세탁물은 완전히 삶는 공정을 거쳐야 하며 세탁물 공급이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을 깊이 인식하고 감염이나 오염방지는 물론 세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및 냄새를 없애는데 철저를 기한다.

- 나. 세탁시 린넨의 마모가 심하고 냄새가 나는 세제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사용세제 변경 요구시는 변경하여 세탁처리 해야 한다.
- 다. 세탁물은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구분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 라. “기타세탁물” 과 “오염세탁물” 은 구분 세탁해야 하며, 오염세탁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처리방법에 의하여 증기소독,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해야 한다. 또한 담요나 직원이까운, 커튼 같은 혼방물은 정전기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하며, 색소침착이 되었거나 기름때가 묻은 것은 특수처리(드라이크리닝 등)하여 얼룩이 없도록 한다.
- 마. “감염세탁물” 은 다른 오염세탁물과 분리하여 전용세탁기로 단독 세탁한다. 세탁처리방법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3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다.
- 바. 세탁물 중 욕양목시트, 환의, 주무복, 앞치마, 의사가운, 언더가운, 방석, 카버 등 풀먹임과 다림질을 필요로 하는 세탁물일 경우 풀질을 하고 다림질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단, 환의, 주무복, 언더가운은 터널식 건조기로 다림질할 수 있어야 한다.
- 사. 사용 후 세탁물(일반/오염 세탁물)과 사용 전 세탁물은 구분하여 보관한다.

대상 품목수량

- 가. 세탁물 세척 시 수선이 요구되는 세탁물이 발생시는 수선하여 수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품한다.
- 나. 세탁 시 재세탁이 요구되는 세탁물이 발생시는 재세탁하여 완성 후 수거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품한다.

세탁전 세탁물과 세탁 후 세탁물 보관장소 구분

- 가. 세탁 전 세탁물 작업공간과 세탁 후 세탁물 작업공간은 구분되어야 한다.
- 나. 세탁물 운반카는 세탁 전, 세탁 중, 세탁 후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 다. 세탁 후(건조 후) 모든 린넨의 작업 및 보관은 바닥에서 30cm 높이 이상의 평상이나 선반에 보관해야 한다.
- 라. 작업실 내의 신발은 별도로 관리하고 주 1회 세탁한다.

마. 세탁물 처리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세탁 전 세탁물과 세탁 후 세탁물 운반차 구분여부

- 가. 적재량 4.5톤 이상의 적재고가 밀폐된 차량으로서 수집용과 납품용으로 구분하여 각각 1대 이상씩 갖추어야 한다.
- 나. 차량의 적재고는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 및 세척이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
- 다. 차량 안에는 소독약품 및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세탁물 수거 및 보급

- 가. 오염세탁물 수거 및 청결세탁물 납품은 본병원이 지정한 시간, 장소에서 해야 한다.
- 나. 집하장 적재카트는 항상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카트(바퀴, 기타) 등으로 인해 시설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제작 관리되어야 한다.
- 다. 위탁업체는 세탁물 반입 및 반출 시, 병원 전산(또는 수기)프로그램으로 세탁물의 수량을 확인하고 각 부서에 직접 배송하여야 하며, 반드시 배송직원은 병원직원에게 검수를 받아야 한다.
- 라. 세탁물 반출 전 자루와 카트 수량을 확인하고 담요, 이불, 시트 등 일부 품목은 개별 수량을 인계받아 세탁 전 분리 작업 시 확인 점검한다.
- 마. 세탁물 처리는 수거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품되어야 하며, 재세탁이 요구되는 세탁물 발생시는 재차 수거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납품되어야 한다.
- 라. “업체”는 소속직원을 상주시켜 각 병실 및 수술실 등 세탁물 발생부서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거 및 보급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운 송

- 가. 오염세탁물은 매일(일요일, 공휴일 제외) 본 병원의 지정된 장소에서 수거해 가고, 세탁처리 후 전량을 수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세탁품목별로 구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단, 2일 이상 연휴가 계속될 경우는 본 병원이 요구하는 일시에 수거 또는 납품하여야 한다.]
- 나. 세탁물 수거 차량은 세탁물 관리규칙에 규정한 적합한 차량으로 밀폐 시설 또는 냉장시설 등을 갖추어 악취 등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완성된 세탁물은 병원체 등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보관 후 밀폐된 용기에 담아 밀폐된 차량에 의해 지정된 장소로 배달해야 한다.
- 라. 운송차량 내부는 매일 근무 종료 후 물걸레로 청결 유지하고 락스 용액(원액1cc 에 물 10배 희석)으로 소독한다.
- 마. 세탁물 운반차는 사용한 세탁물과 세탁된 세탁물을 싣는 공간을 구분하여 운송한다.
- 바. 배송시 커버를 씌어 배송하여야 하며, 타병원 시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사. 세탁물 수거시간 및 공급시간은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수거차량으로의 상차는 “업체”에서 하여야 한다.

납품 검수

- 가. 전 린넨류는 세탁처리 후 본 병원에서 정한 규격에 맞추어 접어 와야 하며 병동세탁물과 수술세탁물 및 담요(이불)카트 구분 정리후 납품한다.
- 나. 모든 세탁물 납품은 품목별로 수량과 무게(kg)를 세탁물수탁처리대장에 정확하게 기록한다.
- 다. 완성된 세탁물 납품시는 수거량과 납품량을 확인한 다음 분배가 용이한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정리정돈 하여야 하며, 매월 거래명세표와 거래대장(상세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라. 환의 및 시트류, 수술 린넨류 등은 재세탁 및 수선 여부 상태를 확인 후 납품해야 하며 수선 및 폐기하여야 할 세탁물이 있을 시는 따로 분리하여 병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마. 세탁물 처리업자는 세탁과정, 운송과정에서 세탁물이 훼손 또는 분실 하였을 경우 이를 현물이나 구입가 등 본 병원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즉시 변상 하여야 한다.
- 바. 세탁물 처리업자는 세탁물 운반과정 중 본원 건물이나 물건을 파손할 시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사.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조건을 이행하지 못 할 때는 차후 어떠한 벌칙에도